#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44 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선교・최수진

김소희 • 박덕흠 • 김도읍

백종헌 · 김대식 · 이달희

이종배 • 한지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,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.

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 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10월 4일을 '장기요양의 날'로 제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장기요양의 날) ①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, 장기요양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의2(장기요양의 날) ① 장기
	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
	알리고, 장기요양요원의 긍지와
	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
	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
	로 정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
	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
	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
	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
	관・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
	<u>수 있다.</u>
	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의
	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
	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
	<u>다.</u>